

평가기관 지정서

기관명 :

대표자명 :

주소 :

지정평가 제도 :

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」 제57조제6항에 의거하여
위의 기관을 지정 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지정기간 :

부터

까지

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

직인